

의안번호	2201207
의 퇴 인	한병도의원
회 답 일	2024. 8. 5.
추 계 번호	24B1468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5억 7,600만원, 2030년 64억 9,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91억 6,900만원(연평균 58억 3,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및 실태조사(안 제9조)	700	—	—	500	—	1,200	240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육성·지원위원회(안 제8조)	6	6	6	6	6	30	6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0조)	750	450	290	450	290	2,230	446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안 제11조)	2,600	3,091	3,602	4,133	4,683	18,109	3,622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의 촉진(안 제12조)	1,520	1,520	1,520	1,520	1,520	7,600	1,520
추가재정소요	5,576	5,067	5,418	6,609	6,499	29,169	5,83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u>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u>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 동물용의약품등 기업의 동물용의약품등 관련 연구개발 및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의무·재량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육성·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u>매년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육성·지원시행계획</u>(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u>(제2항)	의무규정
4	안 제8조(동물용의약품등 산업 육성·지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육성·지원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제1항)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u>동물용의약품등 산업 육성·지원실무위원회</u>(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음.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동물용의약품등의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자로 함(제3항)	의무·재량 규정
5	안 제9조(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u>국내외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u> (제1항)	의무규정
6	안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활성화에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u>(제1항)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u>(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11조(동물용의약품등 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관련 <u>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함</u>(제1항) 1.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의무·재량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8	안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의 촉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용의약품등 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u>외국의 기관·단체 등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u>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용의약품등 관리제도의 개선과 국제화 추진을 위하여 <u>국제협력을 추진하고 동물용의약품등 관리제도에 관한 민간부문의 국제공동연구 또는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u>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용의약품등 산업과 관련하여 <u>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동물용의약품등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u>	재량규정
9	안 제13조(동물용의약품등 산업 특구의 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을 <u>동물용의약품등 산업 특구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u>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	- 미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과 지원하도록 책임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제2항 (연구개발 및 연구·생산시설 개선 지원)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동물용의약품등 기업의 연구개발 및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나, 현시점에서는 구체적 재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 현재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용자)을 통해 제조시설 시준 및 개보수 지원중 - 다만,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상향('24년 동물약품산업 발전대책 수립 중) 및 건축·시설 자재비 인상 등으로 향후 제조업체('23년 기준 60개소) 용자 지원금은 대폭 확대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추계에 한계 * 우수제품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설비 및 공정 규격 등)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head> <tbody> <tr> <td>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용자)(3940-350)</td><td>2,940</td><td>7,660</td><td>3,814</td></tr> <tr> <td>- 제조시설 신축·개보수</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해양수산부> - 민간주도의 수산약품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조성, 안전성·유효성 평가 등을 위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 유효성 연구시설’(가칭 수산약품연구원)의 설치 필요 ※ 전북 익산에 준공('24.7월)된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센터’ 인근에 ‘병설’로 설치하는 경우 2년간 총사업비 약 89억 8,900만원으로 예상 ※ [참고자료 3]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연구시설 설치(안) 참고	사업명	2022	2023	2024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용자)(3940-350)	2,940	7,660	3,814	-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사업명	2022	2023	2024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용자)(3940-350)	2,940	7,660	3,814												
-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2, 5	안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												
	안 제9조(실태조사)														
3	안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 미대상 - 연도별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												
4	안 제8조(동물용의약품 등 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	<전체 위원회(제1항 등)>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유사 위원회 운영사례 참고												
		—	<실무위원회(제3항)> • 미대상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제정안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동물용의약품등의 산업정책 담당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 실무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																						
6	안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																						
7	안 제11조(동물용의약품등 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동물용의약품 기술 관련 R&D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단위: 백만원) <table> <tr> <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 <td>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R&D) 2280-426</td><td rowspan="2">5,880</td><td rowspan="2">7,838</td><td rowspan="2">6,454</td></tr> <tr> <td>—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td></tr> <tr> <td>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6234-300)</td><td rowspan="2">698</td><td rowspan="2">1,070</td><td rowspan="2">1,161</td></tr> <tr> <td>—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복지 기술개발</td></tr> </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사업명	2022	2023	2024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R&D) 2280-426	5,880	7,838	6,454	—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6234-300)	698	1,070	1,161	—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복지 기술개발								
사업명	2022	2023	2024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R&D) 2280-426	5,880	7,838	6,454																						
—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6234-300)	698	1,070	1,161																						
—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복지 기술개발																									
8	안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의 촉진)	○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사업예산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사업((3940-349) 내에 해외수출시장 개척 등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단위: 백만원) <table> <tr> <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 <td>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3940-349)</td><td></td><td></td><td></td></tr> <tr> <td>— 해외수출시장 개척</td><td>600</td><td>600</td><td>491</td></tr> <tr> <td>— 교육 및 홍보</td><td>20</td><td>20</td><td>20</td></tr> <tr> <td>— GMP 컨설팅</td><td>100</td><td>100</td><td>100</td></tr> <tr> <td>— 수출혁신품목육성</td><td>800</td><td>800</td><td>800</td></tr> </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사업명	2022	2023	2024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3940-349)				— 해외수출시장 개척	600	600	491	— 교육 및 홍보	20	20	20	— GMP 컨설팅	100	100	100	— 수출혁신품목육성	800
사업명	2022	2023	2024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3940-349)																									
— 해외수출시장 개척	600	600	491																						
— 교육 및 홍보	20	20	20																						
— GMP 컨설팅	100	100	100																						
— 수출혁신품목육성	800	800	800																						
9	안 제13조(동물용의약품등 산업 특구의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지정 등)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물용의약품등 산업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각종 지원시책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특구지정 지역 지정 및 구체적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 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동물용의약품등(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산업 및 기술개발을 위한 일련의 사업 추진중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약품등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동물용의약품효능·안전성평가센터(전북 익산)를 구축²⁾하고, 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기술 향상 연구 등 실시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4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6	2.2	2.2	2.1	2.1	2.1	2.0

2)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시험을 실시하는 전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시험기관 신설
※ [참고자료 2] 동물용의약품효능·안전성평가센터 개요

- (해양수산부) 연어류 예방백신 및 치료제 개발, 넙치 백신 접종 프로그램 개발 및 가두리 양식어류 예방 백신 개발 등 사업 추진
- ※ [참고자료 1] 동물용의약품 관련 산업 및 예산 현황 참고

□ 제정안은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며, 각종 지원 및 육성정책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나.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및 실태조사(안 제9조)

-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육성·지원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실태조사(3년 주기) 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와 유사 연구용역 사례, 실시 주기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

[표 2] 종합계획 수립비용 및 실태조사 비용 가정

(단위: 백만원)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 수산부	유사 사례
종합계획 수립비용	100	100	•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 170백만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4.4.) • 동물용 의약품 GMP 선진화방안 수립 및 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 80백만원(농식품부, '24.4.) •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실태조사 및 기준설정 로드맵 마련: 80백만원(식약처, '23.6.)
실태조사 비용	300	200	• 말산업 실태조사: 450백만원(농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3733-315) 내 예산) • 종자산업통계조사: 240백만원(농식품부, 종자산업활성화지원(6432-304) 내 예산)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조사: 90백만원(국립수산과학원, '18.1.) • 어류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및 세프티오퍼 유효성 조사: 90백만원(국립수산과학원, '16.3.)

자료: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조달청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2.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추계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및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2억원으로 추계됨

[표 3]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소관	내용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농림축산 식품부	종합계획 수립(5년)	100	—	—	—	—	100
	실태조사(3년)	300	—	—	300	—	600
해양수산부	종합계획 수립(1년)	100	—	—	—	—	100
	실태조사(-1년)	200	—	—	200	—	400
추가재정소요		700	—	—	500	—	1,2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육성·지원위원회(안 제8조)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15명 이내의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위원) 당연진(공무원)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³⁾
 -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차관급 공무원
 - －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육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제정안 및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동물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추계

3) 안 제8조(동물용의약품등 산업 육성·지원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차관급 공무원과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육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회 정원은 15명으로, 이 중 민간위원 수는 10명으로 가정 (과반수 이상)
- 회의개최 횟수는 연간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참석 사례금(안건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⁴⁾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4]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2021~2023년
(단위: 명, 회)

	정원 (A=B+C)	공무원 (B)	민간 위원 (C)	정원대비 민간위원 비율 (C/A)	최근 3년간 회의개최 횟수			연평균
					2021	2022	2023	
동물복지위원회	20	5	15	75.0%	3	3	—	2.0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15	2	13	86.7%	4	4	6	4.7
축산발전심의위원회	25	6	19	76.0%	1	1	2	1.3
동물원및수족관동물관리위원회	10	2	8	80.0%	—	1	—	0.3
평균	17.5	3.8	13.8	78.6%	2.0	2.3	2.0	2.1

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4.6월 기준
2. 해양수산부, 「행정기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4.6월 기준

□ 추계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육성·지원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10	10	10	10	10	—
회의개최 횟수(B, 회)	2	2	2	2	2	—
사례금 단가(C, 백만원/명·회)	0.3	0.3	0.3	0.3	0.3	—
추가재정소요 (D=A×B×C, 백만원)	6	6	6	6	6	30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218쪽)

라.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0조)

-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활성화에 요구되는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등 산업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과 같음
- ※ 이때, 관련 예산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6] 전문인력 양성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소관	내용	소요예산	비고
농림축산식품부	• 제품연구개발, 임상/비임상시험, 인허가, 생산 등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 - GMP·GLP·GCP·인허가등 4과정, 86 교과과목 해설서 마련((인건비, 전문가 자문료, 집필료 등 포함)	150 (매년)	인체의약품 분야에서는 2014년 부터 제약기업·CRO 재직자·임상시험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 교육 및 시험 위탁 용역(관련분야 7개 협회가 교육기간으로 참여)
	• 산업체 등 대상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임상비임상(GCP, GLP), 인허가, 해외수출, R&D 기획 등 분야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 GMP·GLP·GCP·인허가등 4과정 × 연간 각 2회(운영 인건비, 강의료, 원고료 등 포함)	100 (매년)	
해양수산부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R&D기획, 시험법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은 임상/비임상 실험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한 상태로, 따로 선진국 과학자 초빙, 자문, 교육과정 개발·운영이 필요
	- 교육 프로그램 개발(2개 과정×100백만원, 2개 과정×150백만원)	500 (4개 과정, 첫해)	
	- 교육 프로그램 운용(4개×10백만원)	40 (매년)	
	- 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업데이트(4개×40백만원)	160 (2년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활성화에 요구되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2억 3,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소관	내용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농림축산 식품부	동물용의약품 양성 교 육과정 개발 용역	150	150	150	150	150	750
	GMP역량강화 및 전문 가 양성교육 운영 용역	100	100	100	100	100	500
해양수산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R&D 기획, 시험법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500	200	40	200	40	980
추가재정소요		750	450	290	450	290	2,2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안 제11조)

□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양수 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관련 연구개발 예산은 편
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는 현재 동물용의약품 기술 관련 R&D 예산이 편성되어 있
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⁵⁾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R&D 추진, R&D 기술의 산 업화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과 같음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산업화 기술개발(R&D) 예산은 첫 10개 과제를 시
작으로 매년 3개 과제씩 증가⁶⁾하는 것으로 가정

5) 동물용의약품 기술 관련 R&D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2024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R&D) (2280-426)	5,880	7,838	6,454
－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6234-300)	698	1,070	1,161
－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복지기술개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6)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복지기술개발 종료기술 과제 건수:

(계속과제) ('22년) 3개, ('23년) 3개, ('24년) 7개/ (종료과제) ('22년) 1개, ('23년) 3개, ('24년) 3개

-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의약품 및 동물복지기술개발 R&D 예산 편성 내역 참고
- R&D 사업 과제 1개당 지원단가는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150백만원으로 가정
- ※ 이때,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8]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R&D 사업 추진 소요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단년도 기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산업화 기술개발(R&D)	• 포르말린 대체제 구충제, 소독제 등 R&D 사업 과제 지원 (10개과제 × 150백만원)	1,500
연구개발 기술의 산업화 예산 지원	• 연구개발비(과제공모) - 연구과제 3개×300백만원(900백만원) - 수산용동물용의약품 안전성시험 지침에 따른 이중 동물실험 지원(100백만원) * 최초 신약개발 인허가시 필요	1,000
	•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 국내 및 해외(G7회원국, EU 등) 특허 확보·유지 지원	10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추계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관련 R&D 및 산업화 등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81억 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R&D 등의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해양수산부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산업화 기술개발(R&D)	R&D 과제수(A)	10	13	16	19	22	80
	과제당 단가(B)	150	153	156	160	163	—
	소계(C=A×B)	1,500	1,991	2,502	3,033	3,583	12,609
연구개발 기술의 산업화 예산 지원	연구과제 공모(D, 3개 과제)	900	900	900	900	900	4,500
	수산용동물용의약품 안전성시험 지원(E)	100	100	100	100	100	500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F)	100	100	100	100	100	500
	소계(G=D+E+F)	1,100	1,100	1,100	1,100	1,100	5,500
합계(H=C+G)		2,600	3,091	3,602	4,133	4,683	18,109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의 촉진(안 제12조)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의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예산을 참고하여 추계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는 현재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3940-349) 사업 내에 해외수출지원 등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⁷⁾
- 본 추계에서는 해양수산부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외수출지원 등 예산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물용의약품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의 촉진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76억원으로 추계됨

[표 10]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의 촉진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해양 수산부	해외수출시장 개척	600	600	600	600	600	3,000
	교육 및 홍보	20	20	20	20	20	100
	GMP 컨설팅	100	100	100	100	100	500
	수출혁신품목육성	800	800	800	800	800	4,000
	합계	1,520	1,520	1,520	1,520	1,520	7,6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사업예산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 동물용의약품 산업종합지원 중 해외수출지원 등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주요내용	2022	2023	2024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3940-349)	동물약품 개발부터 해외수출까지 전(全) 주기별 맞춤형 육성지원			
- 해외수출시장 개척	동물약품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수출 마케팅 등 지원	600	600	491
- 교육 및 홍보	동물용의약품 등 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출업무 이해 증진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및 자료배포 등 교육·홍보 지원	20	20	20
- GMP 컨설팅	고품질 우수제품 공급 및 수출확대를 위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GMP 컨설팅 지원	100	100	100
- 수출혁신품목육성	업체별 핵심기술에 근거한 특화 품목을 수출혁신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개발, 임상시험 등 지원	800	800	8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대해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동물용의약품 관련 산업 및 예산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동물용의약품 관련 산업 및 예산 현황: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농림축산 식품부	곤충미생물산업육성 지원 (2271-303)	동물용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	인수공통 감염병 및 반려동물용 그린바이오로 직스 기술 기반 동물용 의약품 생산지원 시설 고도화	—	—	300	3,600
	동물용의약품산업중 합지원 (3940-349)	해외수출시장개척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 증진을 위한 수출업체 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	600	600	600	491
		교육·홍보	동물용의약품 등 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출 업무 역량 증진을 위한 품질제도 관련 전문 교 육 및 수출 실무교육 실시	20	20	20	20
		GMP 컨설팅	고품질·우수 동물용의약품 등 생산 및 수출 확 대를 위해 제조·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국제수준 의 GMP 컨설팅 지원	100	100	100	100
		수출혁신품목육성	업체별 핵심기술에 근거한 특화 품목을 수출혁 신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업체를 대상으 로 시험인증(임상·비임상·성능시험 등), 해외제 품등록,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등 지원	800	800	800	800
		동물용의약품임상시험지원 센터구축타당성연구용역(전 북 익산)	동물용의약품 신약 개발 임상시험(제3상)을 지 원하는 시설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	—	—	—	100
		동물용의약품시제품생산시 설구축타당성평가연구용역 (전북 익산)	동물용의약품 효능·시험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	100	—	—
		동물용의약품시제품생산시 설구축(전북 익산)	동물용의약품 효능·시험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	—	500	4,350

소관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동물용의약품효능안전성평가센터구축(전북 익산)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시험을 실시하는 전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시험기관 신설	6,000	6,000	—	—
		동물용의료기기산업거점조성연구용역(경북 경산)	동물용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위한 거점조성 사업의 타당성 평가 연구용역 지원	—	—	30	—
		동물용의료기기산업화지원센터 구축(경북 경산)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품 개발, 생산 인프라 구축, 전문기업 성장 등을 지원	—	—	—	175
		식물백신 기업지원 시설 건립(경북 포항)	식물백신의 연구지원 및 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한 시설 구축	690	—	—	—
		소계		8,210	7,620	2,050	6,036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융자) (3940-350)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동물약품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우수제조시설을 갖춘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자금 융자	12,614	2,940	7,660	3,814
		수출업체 운영지원	동물약품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비 및 운영비 등 지원	4,000	6,460	800	3,800
		소계		16,614	9,400	8,460	7,614
	반려동물전주기 산업화기술개발(R&D) (2280-426)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질병진단·치료제, 의료서비스 등 반려동물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	5,880	7,838	6,454
	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6231-300)	정보시스템 확대 구축(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 재구축 2단계)	법령 제·개정 및 업무환경에 따른 민원업무 포털 등동물용의약품 행정업무 고도화	—	—	3,247	84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복지 기술개발	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기술 향상 연구	628	698	1,070	1,161
	합계(농식품부)			25,452	23,598	22,965	24,949
해양수산부	연어류 예방양식연구(R&D) (3632-315)	연어류 질병대응 기술개발	국내 맞춤형 연어류 예방백신 및 치료제 개발	—	—	900	1,208

소관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수산생물질병 국제표준 및 원헬스 관리체계 구축(R&D) (3632-311)	수산분야 항생제 통합감시 및 내성균 연구	수산분야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특성조사 및 항생제 사용 저감 연구	700	698	701	—
	수산시험연구(R&D) (3632-300)	고효율 어류 백신 및 어종별(넙치) 접종 프로그램 개발<과제>	넙치 백신 접종 프로그램 개발 및 가두리 양식 어류 예방 백신 개발	385	476	490	410
		수산용 포르말린 대체 천연물 유래 스쿠티카병 치료제 개발<과제>	천연물 유래의 친환경 구충제를 개발	400	389	420	—
		소계		785	865	910	410
	수산생물 질병관리 (3041-310)	동물용의약품관리 (수산용의약품 관리 및 감시)	수산용 화학제제 및 생물학적제제의 인허가 관리, 안전한 약품공급	—	150	150	150
		동물용의약품관리 (양식생물의 약품사용실태 조사 등)	약품사용현황 및 주요 양식품종에 대한 폐사동향 등을 조사	—	150	150	150
		소계		—	300	300	300
	수산물 위생관리 (3041-303)	안전한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수산물 위해요소 평가지원 中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정비 연구)	PLS(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 시행에 따른 잔류기준 정비 및 제도 홍보		420	420	420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안전한약품사용 기술개발 (R&D) (3045-304)	수산용의약품 안전관리 기술개발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 수산물의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에 따른 신규 약품사용기준 마련	800	1,455	1,873	1,884
	합계 (해수부)			2,285	3,738	5,104	4,22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전북 익산)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 신약 등 고부가가치 **동물용의약품 개발**을 위한 **효능·안전성 시험**(GLP 및 GCP) 전문기관 구축

* GLP: 동물 신약 등의 안전성 평가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비임상시험 규정

** GCP: 신약의 효능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시험 규정

□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20.4월)
- (사업 기간) 2020년 ~ 2023년(4년)
- (총사업비) 250억원(국비 125, 지방비 125, 지자체자본보조)
 - * 연도별: ('20년) 설계비 10억원, ('21년) 공사비 등 120, ('22년) 공사비 등 120

□ 규모 및 주요시설: 연면적 7,230.8㎡ (지상 2층)

- 효능·안전성 평가를 위한 **축종별 동물실험시설**, **운영시설** 등

전경사진		시설개요				
		(시설명)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성		주요기능	구성	연면적 (㎡)
		1층	효능안전성 평가 실험 시설	소, 돼지, 중대동물, 어 류	축종별 동물실험시설	3,863.2
					검역검수실, 하역장 의료폐기물 보관실 등	
		2층	실험시설	조류, 설치류	동물실험시설	3,367.6
					사무실, 회의실, 세미 나실	
공조실	기계실					
		합계 (연면적)			7,230.8	

□ 사업추진 현황

- 사업대상자(전라북도) 평가·선정('20.4.)
- 설계용역 완료('21.9.)
- 건축공사 업체 선정('22.5.), 건축공사 완료('23.12.)

□ 향후 계획

- 건축물 사용 인허가 및 인증 후 본격 가동('24)

[참고자료 3]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연구시설 설치(안)

(해양수산부 제출자료)⁸⁾

□ 사업 목적

- 민간주도의 수산약품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조성, 안전성·유효성 평가 등을 위한 가칭 수산약품연구원을 먼저 설치된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센터 인근(익산, 군산 등)에 병설 구축을 지원

□ 지원 형태: 지자체 보조('25~계속 / 국비 60%, 지방비 40%)

* (익산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센터) 총사업비 250억(국비 150억, 지방비 100억)

□ 지원 내용

- (내용) 취약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R&D등 기술·인프라 보완
 - 효과적인 수산용 소독제·신약 개발(기존 약품 어종별 안전성·유효성 연구 포함)을 위한 비임상·임상 평가시설, R&D 시설 구축 지원
 - 국내연구 및 생산이 어렵거나, 수입에 의존하던 백신, 치료제 등 연구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등의 신약 연구 기회 증가로 동물용의약품 산업경쟁력 향상을 유도하여 양식산업의 기술 발전에 기여
 - (시설부지) 전북 익산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부지 활용(약 1,512평) 등
 - (주요시설) 시제품생산을 위한 GMP 시설*이(착공 '25.3.) 있는 익산 부지 내 구축, 협력 연구를 통한 시너지를 위해 병설 또는 근접 지역(군산 등) 설치
- * 바이오·화학제제 시제품 생산지원 설비·장비, 시제품 제작시설, 품질관리 시설 등,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설비·장비

□ 기대 효과

- (병설 효과)
 1. 시설물 설치 예산 절감: 임상시험·비임상시험·R&D를 위한 수조 시설의 추가 구축만 필요, 행정실, 사무실, 회의실 등 부설이 필요한 공간의 추가설치 불필요
 2. 운영지원 예산 절감: 행정인력, 인건비 등 공동 운용 임상시험을 위한, 따라서 예산 절감과 유사 신약 등 연구에서 협업 연구, 융복합 연구 등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등과의 긍정적 시너지효과 예상

8)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발췌·정리한 것임

- **(one-stop 지원 인프라)** 동물용의약품 개발→시판까지 one-stop이 가능한 인프라가 익산 단지내에 집중되어 스타트업 기업 유치와 기업 성장 지원에 유리
 - 실험수조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된 신규개발 약품의 야외임상시험은 추가 연구 시설내 시험 및 실제 양식어가 대상 임상시험 제외 등도 일괄 지원으로 연구부터 완제품까지 지원 일원화
- **(R&D환경)** 의약품 R&D의 선결조건은 질병 모니터링과 병원체 확보*
 - ⇒ 동물질병진단센터*(익산)에서 질병 모니터링, 신·변종 질병진단 중
 - 어류질병 진단기술 성숙과 고도화에 시너지효과와 향후 통합(축수산) 병원체 은행 운영으로 국가적 R&D 환경 확립이 기대되는 주변 환경이 이미 구비
 - * 병원체 확보는 모든 진단, 치료 R&D(약품, 진단법 개발 등)에 필수적으로 R&D 시작에 핵심임
 - * 익산구축 완료된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에서 개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실험동물 및 약품개발 목적동물(소, 고양이, 참돔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개발 동물용의약품의 효력 결정
 - 상호 보완적 관계로 상호 수혜적 정책수립에 용이하고, 정책 수행 데이터 수집도 용이해 정책 실현의 완성과 성숙과정에 대한 정책 시험모델로서의 기능도 수행가능
- **(민간주도R&D 활성화)** 신약 연구·개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의 효율적인 개발비 활용으로 신약 출시 기업의 R&D 활성화
- **(기업성장)** 지속적 기술지원(신약 R&D, 품질관리 등)을 통해 기업 역량 강화로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의 꾸준한 성장을 도움
 - 동물용의약품·외품·의료기기의 R&D, 제조·유통기업 대상 기업 지원
 - * 전북도, 익산시 지원하는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비영리) 활용, 시험·검사를 받으려는 사업 신청업체 1개소 당 검사수수료의 최대 30%까지 1회 지원(60백만원/건 한도)
 - 전문교육을 원하는 기업·개인 지원자에게 교육지원(교육기간 최대 10개월)
- **(수출 확대)** 우리나라의 우수한 Bio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신약의 제품화 지원으로 국내 기업 신약 승인 성공률 제고하여, 수입대체 의약품 R&D 지원, 내수시장의 국산 제품의 점유율 향상과 나아가 수출 시장 확대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시설 병설 건축구성(안)

○ 익산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단지(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820-120) 내

*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인근 위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시설 병설 건축구성(안)>

용도	위치	건축면적
해수어 실험실	별관 1층	231.40 m ² (70평)
담수어 실험실	별관 2층	231.40 m ² (70평)
관상어, 새우·패류 등 실험실	별관 3층	231.40 m ² (70평)
야외 수조 실험실, 기계공조실, 발전실, 소회의실	옥상	231.40 m ² (70평)
주차장, 창고	지하 1층	231.40 m ² (70평)
	합계	1,157.02 m ² (350평)

□ 필요 예산

○ (병설·운영 예산 추정) 2년간 89억 8,900만원

<연차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추진연도	주요 추진내용	금액	비 고
1차년도 (2025년)	- 설계, 건축(수산동물 실험시설) - 건축 인허가 절차(도시계획 변경 등)	4,815	· 설계비(공사비의 4.31%): 3.26억 · 별관(지상1,2층): 45억원 - 건평 1,157 m² × 6,533,754원/m² · 도시계획변경비: 0.2억
2차년도 (2026년)	- 장비도입 - 동물시험시설 설치·시범운영 - 평가시설 국가 등록, 인력채용 및 운용	4,174	· 별관(지상3,4층) : 39억 · 감리 : 0.8억 - 건축비(8.5억)의 1.06% · 장비구입비(냉동고 등 일반장비) : 1억 * 필수 정밀분석 장비: 본관과 공동 사용 · 연구인력 채용: 0.7억
합 계		8,989	

<연차별 사업비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비고	
직간접비 내역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8,989	4,815	100.0	4,174	100.0		
직 접 비	공사비	7,560	3,780	78.51	3,780	88.91	• 단위면적(㎡)당 공사비 단가 6,533,754원 (조달청 공사비 정보, '25년 5월 발주시 단가) * 건축면적: 1,524㎡
	설계비	326	326	6.77			• 건축부문 효율: 공사비의 4.31%, － 제2종 보통(교육연구시설), 중급 기준 적용
	감리비	80			80	1.92	• 건축부문 효율: 공사비의 1.06%, － 제2종 보통(교육연구시설), 중급 기준 적용
	시설부대비	20			20	0.49	• 건축부문 효율: 공사비의 0.27%, － 제2종 보통(교육연구시설), 중급 기준 적용 * 건축부문의 시설부대비 효율은 ‘건설부문 효율’을 적용
	도시계획변경비	20	20	0.42			• 미정
	예비비	378	378	7.85			• 공사비의 5%
	실험장비 구입비	24			24	0.57	• freezer: 1.5백만원 × 2대 • Deepfreezer: 10백만원 × 1대 • Biological safety cabinet: 4백만원 × 2대 • Autoclave: 1.5백만원 × 2대
	순환여과식 수조 설치비	197			197	4.72	• 순환여과식 수조 10set < set당 구성 > － 사각 원라인 수조 6m × 1m × 0.6m: 6백 만원 － 여과조 1.2m × 1.2m × 0.8m: 1.1백만원 － 히트펌프 3마력: 2.2백만원 － 여과재: 4.5백만원 － 배관설치비: 2.4백만원 － 순환모터: 0.21백만원 • 설비예비비: 설비 금액의 20%
	친환경 태양광 패널	311	311	6.32			• 주차장 661㎡ (300W 태양광 패널 × 413개 패널), 면적 70%설치, 300W 패널 가격 752,107원
	인건비	73			73	1.75	• 연구원: 2~3명